

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황주홍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252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16. 7. 28.

발의자 : 황주홍 · 이찬열 · 김철민
손금주 · 김수민 · 윤관석
박홍근 · 강창일 · 이동섭
홍문표 · 김동철 · 주승용
이종걸 · 유성엽 · 김삼화
최경환 의원(16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서는 크루즈산업 발전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크루즈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되었거나 지정된 후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경우에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운영을 제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은 없는 실정임.

이에 「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등 유사입법례에 준하여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(안 제13조제4항 신설).

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.

다만,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.

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
2.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
3. 정당한 사유 없이 전문인력 양성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한 경우
4.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전문인력 양성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 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3조(크루즈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등) ① ~ ③ (생 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	<p>제13조(크루즈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등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.</u> 다만,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.</p> <p><u>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</u></p> <p><u>2.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</u></p> <p><u>3. 정당한 사유 없이 전문인력 양성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자연한 경우</u></p> <p><u>4.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전문인력 양성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</u></p>